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한정애 · 조계원 · 박희승
박수현 · 이재정 · 조인철
황명선 · 유동수 · 김주영
한민수 · 양문석 · 박홍근
이수진 · 박홍배 · 서영교
고민정 · 허영 · 최기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

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광고 기재사항)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 및 근로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통지한 이후 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서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을 “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채용과정에서 서류·전자적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혼인여부·재산”을 “재산·혼 인과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정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① 구인자는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해 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 다.

②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를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 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인자에게”를 “구인자, 구직자 또는 채용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5.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3,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4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③ 구인자는 <u>구직자를 채용한 후에</u>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u>제3조의2(채용광고 기재사항) 구</u> <u>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u> <u>및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u> <u>다.</u>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만, 정당한 사유로 변</u> <u>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u> <u>내용과 변경이유를 제7조제2항</u> <u>에 따른 방법으로 구직자에게</u> <u>알려야 한다.</u> ③ -----<u>채용대상자를 확</u> <u>정하여 통지한 이후 또는 구직</u> <u>자를 채용한 후에</u>----- ----- ----- ----- ----- <u>다</u> <u>만, 정당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u> <u>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과 변</u>

④ (생 략)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u>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생 략)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u>혼인여부 · 재산</u> 3. (생 략) <u><신 설></u>	<u>경이유를 서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u>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채용과정에서 서류 · 전자적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여서는-----.</u> 1. (현행과 같음) 2. -----<u>재산 · 혼인과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정보</u>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① <u>구인자는 채용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u>
--	--

	<u>에 구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u> <u>②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생략) <u><신 설></u>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14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구인자에게</u>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조사) ① ----- ----- --<u>구인자, 구직자 또는 채용에</u> <u>관여한 자 등에 대하여</u>----- ----- -----.
② ~ ④ (생략) 제17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 ~ 3.</u> (생략) <u><신 설></u> ④ (생략)	----- -----. <u>1. 제8조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u> <u>2. ~ 4.</u>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u>5.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u> ④ (현행과 같음)
--	---